

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(2022년 귀속)

※ 신고안내유형 및 기장의무 안내

성명	양***	생년월일	79.12.16
안내유형	모두채움(납부)		
기장의무	간편장부대상자	추계시 적용경비율	단순경비율
납부기한 직권연장 여부		ARS 개별인증번호	20216118

※ 사업장별 수입금액

사업자 등록번호	상호	수입종류 구분코드	업종 코드	사업 형태	기장 의무	경비율	수입금액	기준경비율		단순경비율	
								일반	자가	일반 (기본)	자가 (초과)
		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결정자료	940909	단독	간편장부	단순	400,000	17.0%	17.0%	64.1%	49.7%
총 계							400,000				

※ 타소득(합산대상) 자료유무

소득종류	이자	배당	근로		연금	기타
			단일	복수		
해당여부	X	X	O	X	X	X

※ 종교인기타 소득유무 : X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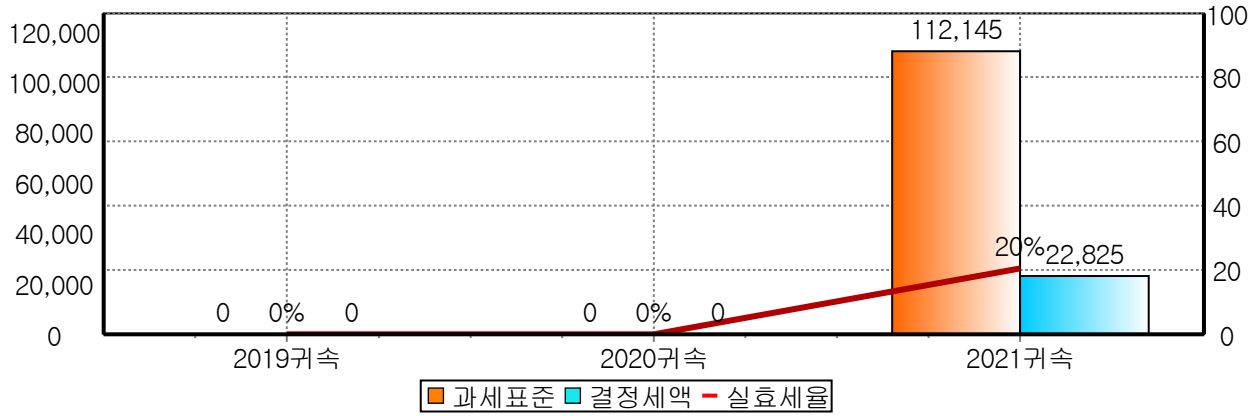
※ 공제 참고자료

구분		납입액(부담액)	공제 가능액
기납부 세액	중간에납세액	0원	중간에납세액 전액
	원천징수세액 (인적용역 사업소득)	12,000원	원천징수세액 전액
소득 공제 항목	국민연금보험료	2,907,900원	납부액전액
	개인연금저축	0원	납입액의 40%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
	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(노란우산공제)	0원	납입액과 200만원(사업소득 1억원초과), 300만원(사업소득 1억원이하), 500만원(사업소득 4천만원이하) 중 적은 금액
세액 공제 항목	퇴직연금세액공제	0원	하단 참고사항을 확인하세요
	연금계좌세액공제	0원	

- 1)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) 이하인 거주자는 15%
 - ㄱ) 50세 이상 : 납입액 [한도 600만원(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)]
 - ㄴ) 50세 미만 : 납입액 [한도 400만원(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)]
- 2) 종합소득금액 1억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) 거주자는 12%
 - ㄱ) 50세 이상 : 납입액 [한도 600만원(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)]
 - ㄴ) 50세 미만 : 납입액 [한도 400만원(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)]
- 3) 종합소득금액 1억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) 초과자는 300만원한도 12%

※ 가산세 항목				
가산세 항목	가산세 적용사유 또는 가산세 대상			
무신고 또는 무기장가산세				
(세금)계산서관련 보고불성실	미(지연) 제출금액			0 원
현금영수증미가맹				
현금영수증미발급	미발급 금액			0 원
현금영수증발급거부	10만원 미만	0 건	10만원이상	0 원
신용카드발급거부	10만원 미만	0 건	10만원이상	0 원
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	무과소신고금액			0 원
사업용계좌미신고				

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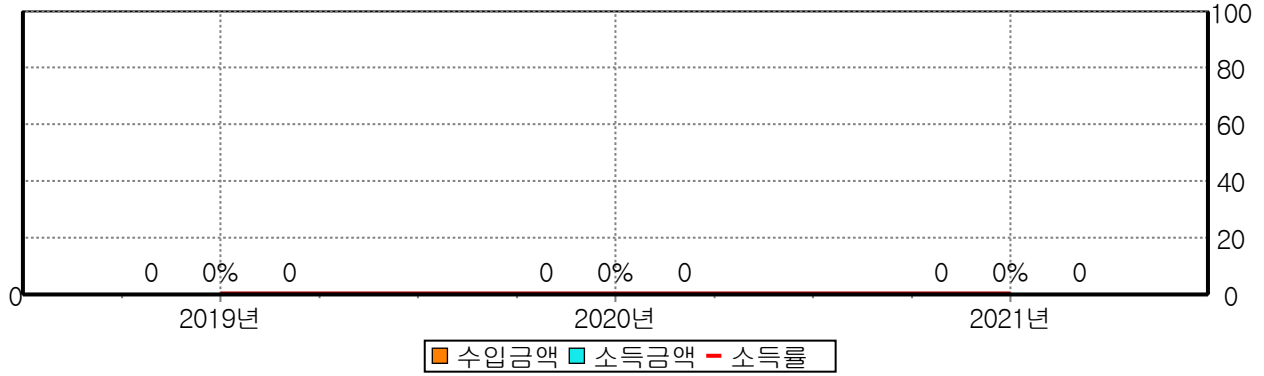


※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9귀속	2020귀속	2021귀속
종합소득금액	0	0	135,289
소득공제	0	0	23,143
과세표준	0	0	112,145
세율	0.00 %	0.00 %	35.00 %
산출세액	0	0	24,351
공제·감면세액	0	0	1,525
결정세액	0	0	22,825
실효세율	0.00 %	0.00 %	20.35 %

최근 3년간 신고소득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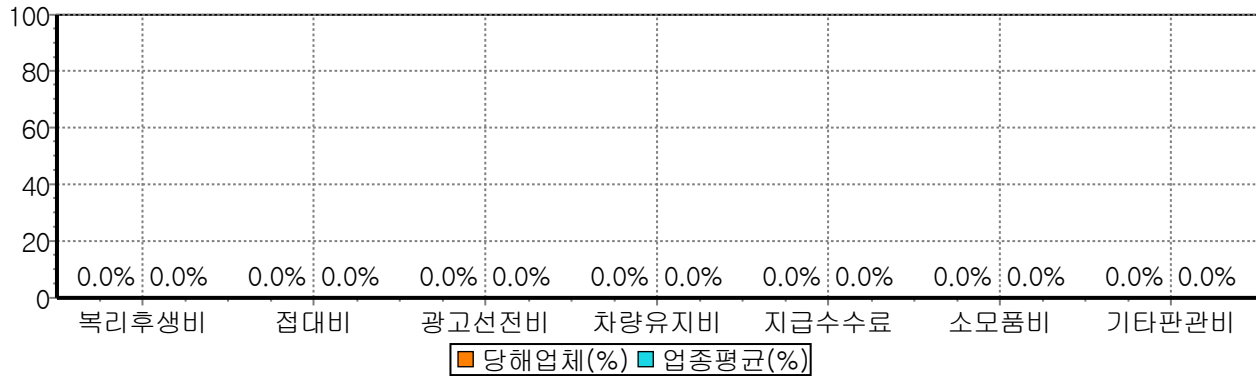


※ 최근 3년간 신고소득률

(단위 : 천원)

상호	사업자등록번호		
귀 속 연 도	2019년	2020년	2021년
수입금액	0	0	0
필요경비	0	0	0
소득금액	0	0	0
소득률(당해업체)	0.00 %	0.00 %	0.00 %

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율 분석(주사업장 기준)



※ 2021년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율 분석(주사업장 기준)

(단위 : 천원)

계정과목	금액	당해업체(%)	업종평균(%)
4.복리후생비	0	0.00	0.00
18.접대비	0	0.00	0.00
19.광고선전비	0	0.00	0.00
22.차량유지비	0	0.00	0.00
24.지급수수료	0	0.00	0.00
28.소모품비	0	0.00	0.00
34.기타판관비	0	0.00	0.00

※ 2022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분석

(단위 : 건, 원)

구분	합계	신변잡화구입	가정용품구입	업무무관 업소이용	개인적치료	해외사용액
건수	0	0	0	0	0	0
금액	0	0	0	0	0	0

※ 소득세 개별분석자료: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대상자

※ 업종별 유의사항

업종	업종코드	신고시 유의할 사항
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	94090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자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비와 주택구입을 위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○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등은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였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 ○ 사업자등록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대비 한도 계산시 일반기업의 기본한도액(1,200만원)을 적용하여야 합니다. ○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인건비, 복리후생비,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.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○ 「보험업법」에 규정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 같은 법 제98조제4호를 위반한 경우, 해당 대납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「소득세법」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.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○ 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, 계속 반복적으로 미술품을 거래하는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매매 차익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.